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300회 제2차 정례회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

【의원발의】

## 검토보고서



2023. 11.

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

## 검토보고서

2023. 11. .

경기도시위원회

### 1. 검토과정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
- 발의자: 이선주 의원 등 8명(남현주, 황국주, 장호섭, 서보영, 고명욱, 김장관, 이진환)
- 발의일자: 2023. 11. 3.
- 회부일자: 2023. 11. 3.
- 검토기간: 2023. 11. 3. ~ 11. 7.(5일간)

### 2. 제안이유

- 「에너지법」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, 신·재생에너지 이용 촉진, 온실 가스 배출 저감 등을 촉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「에너지법」 제4조제2항에 위임된 지역에너지 시책을 규정함(안 제2조)
- 공공분야, 교통 및 건축분야, 신·재생에너지분야 시책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 ~ 제5조)
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등 사업의 내용과 비용 지원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달서구 에너지센터 설치·운영 사항 및 업무의 위탁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 및 제9조)

## 4. 참고사항

- 제정조례안: 붙임
- 관계법령
  - 「에너지법」 제4조
  -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28조
  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
  -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1조, 제4조
- 비용추계: 미첨부 대상
- 입법예고(2023. 11. 3. ~ 11. 13.): 의견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·재생 에너지 사용 및 보급 확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
- 에너지 절약과 신·재생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 촉진 등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·종합적으로 추진하게 함으로써 우리 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관련법령 등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<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>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에너지법」 제4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역에너지시책)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「에너지법」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에너지시책을 분야별로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한 경우 이를 달서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표해야 한다.

제3조(공공분야 시책) 구청장은 공공분야의 에너지 절약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.

1.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 목표 설정 및 관리
2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2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물품의 보급 및 사용
3. 업무용 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
4. 그 밖에 공공분야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

제4조(교통 및 건축분야 시책) ① 구청장은 교통분야의 에너지 절약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.

1. 자동차 연료를 절감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도로교통 체계 구축
2.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, 요일별 차량 운행 등 교통량을 감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
3.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보행자 편의 증진
4. 그 밖에 교통분야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

② 구청장은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신·재생에너지분야 시책) 구청장은 신·재생에너지 사용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.

1. 신·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장려
2. 지역 내 신·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확대
3. 그 밖에 신·재생에너지 사용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

제6조(비용지원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
2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
3.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경우
4.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

제7조(협약) 구청장은 관련 공공기관, 민간기업 또는 사회단체 등과 에너지 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
제8조(달서구 에너지센터) ①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, 신·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등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달서구 에너지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에너지 이용 합리화 관련 사업 지원 업무
2. 신·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지원 업무

3. 에너지 현황 관련 통계 작성 업무

4. 그 밖에 에너지 절약 관련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③ 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9조(업무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및 관리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, 운영,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 계 법령

### □ 에너지법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,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, 에너지의 생산·전환·수송·저장·이용 등의 안전성,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,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.

### □ 에너지이용 합리화법

제28조(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) ① 정부는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로서 에너지의 절약과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약속(이하 “자발적 협약”이라 한다)한 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, 이행방법의 기준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
## 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· 이용 · 보급 촉진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생략 -

3. 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” (이하 “신 · 재생에너지 설비” 라 한다)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(이하 “신 · 재생에너지” 라 한다)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 · 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- 생략 -

## 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· 녹색성장 기본법」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